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216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216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합269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유진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변론 종결 2024. 9. 4.

판결 선고 2024. 10. 3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가합2694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8. 체결된, 별지 1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9. 체결된, 별지 1 제18,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0.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 주식회사 B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1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소외 회사에게 별지 3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 C과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1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별지 1 제18,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0. 체결된 추가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에게 별지 4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와 별지 5, 6을 포함하고, 별지 1 내지 4는 이 판결의 별지 1 내지 4로 대체하며, 별지 7, 8을 추가한다).

○ 9면 하 1행부터 10면 4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2)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그 체결일별로 나누어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다 제17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 별지 6 기재 재산 5,986,957,120원¹⁾ 상당(갑 제16 내지 18호증)과 별지 7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별로 내역 및 가액을 달리하는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도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다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별로 가액이 변동된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근저당권설정계약(2020. 6. 8.)	$77,138,9103) = 2,619,749,310(= 263,463,510 + 57,648,800 + 909,645,000 + 1,054,515,000 + 320,166,000 + 14,311,000) - 2,542,610,400(= 209,281,600 + 58,253,800 + 945,340,000 + 1,020,415,000 + 309,320,000)$
제2근저당권설정계약(2020. 6. 19.)	77,138,9104) 각주 3)과 같다.
제3근저당권설정계약(2020. 7. 8.)	$88,193,9105) = 2,668,759,810(= 2,619,749,310 + 49,010,500) - 2,580,565,900(= 2,542,610,400 + 37,955,500)$
제4근저당권설정계약(2020. 8. 27.)	$55,206,0106) = 2,677,263,910(= 2,668,759,810 + 8,504,100) - 2,622,057,900(= 2,580,565,900 + 41,492,000)$
제5, 6근저당권설정계약(2020. 11. 10.)	$152,184,3107) = 2,865,366,260(= 2,677,263,910 + 107,580,000 + 9,951,850 + 70,570,500) - 2,713,181,950(= 2,622,057,900 + 1,024,100 + 62,380,000 + 27,719,950)$

그러나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제공받았다거나 거래처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적극재산 산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미수금 채권을 보유한 사정을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 10면 본문 하 6행부터 14면 5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3)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2, 14, 20 내지 2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3, 7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 별지 8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별로 채권자 및 가액을 달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무의 가액이 같은 표 채무액란 기재 가액을 넘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극재산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각 소극재산의 체결일별 가액 산정 사유는 별지 8 표 비고란 기재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① 순번 2: 기준일 거래현황(갑 제27호증)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잔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원리금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H은행에 대한 체결일별 채무 가액은 위 거래현황의 기준일별 대출잔액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H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무 900,000,000원을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 금액 상당은 이 부분 소극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순번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의 합계인 900,000,000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 270,000,000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 540,000,000원 +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 90,000,000원)을 소극재산 가액으로 인정한다.

③ 순번 6: 건강요양보험료 3,031,200원(납부기한 2020. 11. 10.), 연금보험료 3,268,120원(납부기한 2020. 11. 10.), 고용보험료 549,800원(납부기한 2020. 11. 10.), 산재보험료 408,880원(납부기한 2020. 11. 10.)의 합계 7,258,000원은 2020. 10. 이후 기간에 대한 보험료이므로(을가 제1호증 267 내지 271면), 이를 이 사건 제5, 6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2020. 11. 10.) 당시의 소극재산 가액으로만 인정한다.

④ 순번 7: 소외 회사는 피고 C으로 2020. 6. 30. 100,000,000원, 2020. 7. 10. 50,000,000원, 2020. 8. 25. 150,000,000원, 2020. 9. 8. 100,000,000원, 2020. 9. 16. 1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을다 제1, 2, 7 내지 9호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별로 당시 존재한 차용금의 합계액을 소극재산 가액으로 인정한다.

⑤ 순번 8: 주식회사 J는 2020. 8. 12.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2178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8. 18.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20. 9. 24. 확정되었다(갑 제12호증). 다만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2020. 8. 이전 중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4 내지 6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의 소극재산으로만 인정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의 소극재산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 순번 12: 소외 회사와 아래 표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전에 체결되어 있었고, 이를 기초로 아래 표 체불임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위 채무 합계 192,476,698원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의 소극재산 가액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8)

1	S	2016. 8. 10.~2020. 8. 21.	22,760,801	220면 이하
2	T	2020. 5. 19.~2020. 12. 31.	6,500,001	250면 이하
3	U	2020. 2. 3.~2021. 2. 5.	18,098,014	354면 이하
4	V	2018. 3. 15.~2020. 12. 31.	20,000,707	360면 이하
5	W	2011. 1. 21.~2020. 12. 31.	42,001,210	366면 이하
6	X	2020. 2. 10.~2021. 2. 10.	25,324,939	372면 이하
7	Y	2020. 2. 3.~2021. 2. 15.	31,912,668	473면 이하
8	Z	2018. 10. 15.~2020. 12. 21.	25,878,358	475면 이하
합계	192,476,698			

⑦ 순번 1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별 소외 회사의 AA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액[본인금융거래(갑 제24호증의 2)의 표면잔액란 기재 금액]을 소극재산 가액으로 인정한다.

⑧ 순번 14: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AC와 사이에 EE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20년 제1139호로 '공사대금 99,000,000원을 2020. 12. 31. 30,000,000원, 2021. 1. 31. 30,000,000원, 2021. 2. 26. 39,000,000원 총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23호증)를 작성한 것은 2020. 11. 23.이나, 그 원인이 된 공사대금 채무 99,000,000원(당초 기한 2019. 4. 15.)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AG으로부터 이를 인수한 2019. 10. 11. 당시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갑 제26호증), '준공완료 후 2주 경과'라는 대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한다.

⑨ 순번 15: 계정과목이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AF의 거래처원장(갑 제25호증의 2)은 세무 및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일치하고, 달리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별 외상매출금 잔액을 소극재산 가액으로 인정한다.

나) 원고는 AB에 대한 채무 368,000,000원, 주식회사 AD에 대한 채무 89,308,000원, AE에 대한 채무 102,384,700원을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4,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에 소외 회사가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기재(486면)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AE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제5, 6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0. 11. 20.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채무초과 및 사해의사 여부

가) 별지 7 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별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별지 8 표 기재에 의하면 체결일별 소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차액란 기재 금액만큼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2020. 6. 8.)	6,045,291,078	5,527,960,373	517,330,705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2020. 6. 19.)	6,006,305,154	5,623,329,520	382,975,634
제3근저당권설정계약 (2020. 7. 8.)	5,988,760,464	5,706,452,647	282,307,817
제4근저당권설정계약 (2020. 8. 27.)	6,017,510,002	6,024,272,238	-6,762,236
제5, 6근저당권설정계약 (2020. 11. 10.)	6,022,340,466	6,176,330,150	-153,989,684

나) 소외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A,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4 내지 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은 초과한 상태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가액 대비 소극재산 가액의 비율은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의 경우 약 100.11%{= $6,024,272,238 \div 6,017,510,002 \times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 이 사건 제5, 6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의 경우 약 102.56%{= $6,176,330,150 \div 6,022,340,466 \times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가 보유한 미수금 채권이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 가액이 이 사건 제4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의 경우에는 채무초과액 6,762,236원을 넘는 55,206,010원이었고, 이 사건 제5, 6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의 경우에는 채무초과액 153,989,684원에 근접한 152,184,310원이었는바, 미수금 채권 회수를 기대하였을 소외 회사로서는 변제 자력이 충분하여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담보제공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점, ③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중 별지 6 순번 22 내지 102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기준시점이 2018. 9. 4.인 감정평가서(갑 제18호증)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4 내지 6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년경에는 그 가치가 상승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④ 소외 회사는 부품을 공급받거나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제17 내지 19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약 6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제4 내지 6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당시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상우

판사김건우

판사류희상

별지

- 1) 원고는 2022. 10.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제11부동산(별지 6 순번 11) 가액을 17,247,9200원, M(별지 6 순번 63)의 가액을 1,522,7066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각각 17,247,920원 및 1,522,706원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N 및 O(별지 6 순번 66, 67) 공유지분이 5798/152936임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45, 제16호증의 4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각 부동산 공유지분이 4572/1920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유지분을 전제로 N 및 O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 2) 2020년 매출현황표(을다 제21호증 2면) 중 2019년 잔액과 체결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매출 합계액에서 2020년 수금현황표(을다 제21호증 3면) 중 체결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입금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 3) = 2,619,749,310(= 263,463,510 + 57,648,800 + 909,645,000 + 1,054,515,000 + 320,166,000 + 14,311,000) - 2,542,610,400(= 209,281,600 + 58,253,800 + 945,340,000 + 1,020,415,000 + 309,320,000)
- 4) 각주 3)과 같다.
- 5) = 2,668,759,810(= 2,619,749,310 + 49,010,500) - 2,580,565,900(= 2,542,610,400 +

37,955,500)

6) = 2,677,263,910(= 2,668,759,810 + 8,504,100) - 2,622,057,900(= 2,580,565,900 + 41,492,000)

7) = 2,865,366,260(= 2,677,263,910 + 107,580,000 + 9,951,850 + 70,570,500) - 2,713,181,950(= 2,622,057,900 + 1,024,100 + 62,380,000 + 27,719,950)

8)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소외 회사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